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6일, 복기왕의원 · 이종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6. 4. 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복기왕 · 이종욱의원)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

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세일)

1.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략) ⑤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¹⁾·시장·군수-----</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u> <후단 삭제>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 ⑨ (생략)	<u>육세·부과금</u>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u>유류의 구매 비용</u> ⑥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들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3조(재정지원)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u>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u>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u> ----- ---.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③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③ (생략)	<u>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u>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²⁾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³⁾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LPG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 및 화물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음(2001.7~).

이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유가보조금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4.>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5)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도는 유류세연동보조금(2001년~)과 유가연동보조금(2022년~)으로 구분되는데,

①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LPG 세율이 인상(2001, 2005)됨에 따라 운수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다시 돌려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류세액과 2001년 유류세액과의 차이, 즉 지급단가(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 -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에 주유량(지급한도 이내)을 곱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임.

이는 당초 2001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운수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예정임.⁶⁾

② 유가연동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으며, 유류세 인하기간(2026.4.30.)⁷⁾까지 한시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기준가격(1,700원/ℓ) 초과 유류비의 70%를 지급한도(기준단가 183.21원/ℓ <2001.6 기준 유류세>) 이내에서 보조하는 것임.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및 보조금액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 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
- 나. 비상경제장관회의 <2026. 3. 1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 삭제 >

4. < 삭제 >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⑤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유가보조금(원/ℓ 또는 원/Nm}^3\text{, 원/kg)} = \text{주유·충전량(ℓ 또는 Nm}^3\text{, kg)} \times \text{지급단가(원/ℓ 또는 원/Nm}^3\text{, 원/kg)}$$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비상경제장관회의 <2026. 3. 1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화물·택시·버스 총 610,987대에 대하여 약 1조 7,739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었음.

【 업종별·유종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2025년 기준) 】

구분		지급대수 (대)	지급량 (만리터)	지급액(억원)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계
화물	경유	358,731	484,816	12,447	5	12,452
	LPG	27,636	17,332	292	-	292
	수소	6	4	2	-	2
	소계	386,373	502,152	12,741	5	12,746
택시	경유	310	192	5	-	5
	LPG	184,652	149,936	2,497	-	2,497
	수소	70	4	3	-	3
	소계	185,032	150,132	2,505	0	2,505
버스	경유	15,548	54,052	1,507	0.4	1,507.4
	LPG	39	25	0.4	-	0.4
	CNG	21,906	84,165	539	-	539
	수소	2,089	918	442	-	442
	소계	39,582	139,160	2,488.4	0.4	2,488.8
총계		610,987	791,444	17,734	5.4	17,739.4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버스·택시·화물 업계에서 최근 중동정세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⁸⁾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 구매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⁹⁾의 발령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는 납부한 유류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가보조금의 지급 한도가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로 제한되고 유류세 인하 시 유류세에 연동된 보조금이 감소(현재 유류세 - 2001.6. 기준 유류세)하는 문제가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 시 유류세 인하¹⁰⁾와 함께 유류의 구

8) SBS biz, 「고유가 직격탄 맞은 운송업계…정부 “유류비·통행료 지원 검토”」, 2026.3.24.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3.26.

- 휘발유($\Delta 7 \rightarrow \Delta 15\%$), 경유($\Delta 10 \rightarrow \Delta 25\%$) 유류세 인하 확대(3.27~5.31)

매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종사자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물·여객운송 분야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경우 교통·물류 대란, 물류비의 소비자 전가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적시성 높은 지원정책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는 주요 산유국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정세불안,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확산 등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¹¹⁾ 예외적·긴급한 상황으로,

1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¹²⁾된 경우’에 한정하여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지원범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별표 5」) 】

경보단계	발령 기준
관심 (Blue)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불안 * 원유감산 예고, 테러·폭동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출제한 우려
	·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운송차질 우려
	·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 향후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주의 (Yellow)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불안 증가 * 원유감산 실시, 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확산
	·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확산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도입 차질 전망
경계 (Orange)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불안 심화 *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
	· 석유 수송경로 일부 봉쇄 및 단기적 차질
	· 국제 석유시장에서 석유조달 일부 차질
	· 호르무즈 봉쇄 등 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 *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심각 (Red)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 악화 * 원유생산 중단, 주변국 전쟁 확산, 생산·수송시설 파괴 심화, 전면적 수출 제한 등
	· 석유 수송경로 전면봉쇄 및 장기적 차질
	· 국제 석유시장에서 석유조달 전면 차질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심각한 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 *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1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통합특별시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규정의 주체에도 국토교통부장관·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¹³⁾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21. 7. 27.>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또한, 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을 지원 주체로 추가하면서 이 법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47호, 2026.3.5. 일부개정)¹⁴⁾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이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한시 상향 중(3~4월까지 유가 1,700원/ℓ 초과분의 50%→70%)이나, 유류세 환급 구조로 인해 지원에 한계에 있어, 상황 장기화 대비, 자원안보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4)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복기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조금 지급 주체의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자료 제공 요청 등의 주체를 수정하고,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안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9. ----- ----- ----- ----- ----- -----.
가. <u>특별시장</u>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u>특별시장</u> · <u>통합특별시장</u> --- ----- -----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개정안과 같음)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

1.·2. (개정안과 같음)

	<u>유대체연료 사</u> <u>업법」 제18조</u> <u>제2항 제1호에</u> <u>따라 석유가스</u> <u>중 부탄에 각</u> <u>각 부과되는</u> <u>개별소비세·</u> <u>교육세·부과</u> <u>금</u>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자원안 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 송사업자등이 화 물자동차를 운행 하기 위하여 구 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③ (생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	③ (개정안과 같음)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 음)
--	---	---

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
수는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
게 사용하도록 지
도 · 감독하여야 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
수는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제4
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 ----- ----- -----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u>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u>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시·도지사, 시
장 또는 군수-----

1. · 2. (현행과 같

④ · ⑤ (생략)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u>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현행과 같음)	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u>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는-----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	---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
청장에게 제8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자
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
격 확인과 제23조
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
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2

		<u>제1항, 제62조제2항</u> <u>의 개정규정 중 통합</u> <u>특별시장에 관한 부</u> <u>분은 2026년 7월 1일</u> <u>부터 시행한다.</u>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

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9. ----- ----- ----- -----.
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u> - ----- -----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정지원) ① (생략)	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u>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② <u>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

2. 「<u>개별소비세법</u>」 제1조제2항제4호바목, 「<u>교육세법</u>」 제5조제1항,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u>」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과금 ③ (생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생략) ② <u>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u>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u>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	<u>육세 · 부과금</u> 2. 「<u>국가자원안보 특별법</u>」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③ <u>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

나 용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④ · ⑤ (생략)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

③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1.·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③ (현행과 같음)